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4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김민전 · 조정훈
안철수 · 김도읍 · 이현승
고동진 · 김용태 · 윤한홍
곽규택 · 박정하 · 김상훈
우재준 · 이만희 · 김기웅
김선교 · 서지영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·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,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·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).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“5년 이상의 징역”을 “7년 이상의 징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7년 이상의 징역”을 “10년 이상의 징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10년 이상의 징역”을 “15년 이상의 징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5년 이상의 징역”을 “7년 이상의 징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7년 이상의 징역”을 “10년 이상의 징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5년 이상의 유기징역”을 “7년 이상의 유기징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”을 “3년 이상의 유기징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10년 이하의 징역”을 “15년 이하의 징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약취·유인죄의 가중처벌)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(略取) 또는 유인(誘引)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 처벌한다.	제5조의2(약취·유인죄의 가중처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<u>5년 이상</u> 의 징역에 처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7년 이상</u> 의 징역-----.
2.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, 무기 또는 <u>7년 이상의 징역</u> 에 처한다.	2. ----- ----- ----- <u>10년 이상의</u> 징역-----.
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가중 처벌한다.

1.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2. (생략)

3.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·상해·감금 또는 유기(遺棄)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4.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(幫助)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1. -----

--- 15년 이상의 징역 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7년 이상의
징역-----.

4. -----

-----10년 이
상의 징역-----.

③ -----

-----7년
이상의 유기징역-----.
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<u>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</u> 에 처한다.	⑦ ----- ----- ----- <u>3</u> <u>년 이상의 유기징역</u> ----- ---.
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·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<u>10년 이하의 징역</u> 에 처한다.	⑧ ----- ----- ----- ----- <u>15년 이하의 징역</u> ----- ----.